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8일, 김종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양의원)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 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6조제4항)

개정안 제6조제4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¹⁾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현행법 제6조제4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6조제4항은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정희용(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6조제4항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3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하의 세대주는 동 사업에 신청하여 농지 등 영농기반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개정안 제6조제4항을 통한 일몰기한 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특례 지급 현황, 정부의 융자 지원 사업 및 귀농인 현황 등을 중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10조제2항)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제2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여건 악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통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I)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참고로, 주민세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규모 영세 농어업인은 면세 사업장임.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 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여건 악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영농사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올해(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부안을 검토 중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16조제1항)

개정안 제16조제1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3)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280만원 한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 증가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개량에 따른 감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주택개량을 통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농·어촌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35조의2)

개정안 제35조의2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54)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4조제1항5)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토지공시가격등”) 6억원 까지 재산세액을 면제하고,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의2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023년 농가고령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 농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⁶⁾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고령층 농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고 있는 점⁷⁾ 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6)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농가 52.6%, 임가 52.8%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두 개정안 모두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5) 기업 합병·분할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김종양의원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8)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8)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登記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현행법 제57조의2제2항, 부실금융기관등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현행법 제57조의2제5항 및 금융기관 등이 관련법에 따른 계약이전결정 등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하는 현행법 제57조의3제1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2항은 농업협동조합 간의 합병,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등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지방세제 지원에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및 건전한 경쟁 등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임⁹⁾.

개정안 제57조의2제2항을 통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합병을 추진 중인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구조 개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9)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편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87면 참조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예방,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업의 경영개선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권고·요구·명령 등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개정안 제57조의2제5항을 통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향후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점주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조치의 수용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의 양도 및 계약이전 명령으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명령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 제57조의3제1항을 통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29.2억원(연평균 8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0.65억원(연평균 0.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안 제57조의3제1항).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